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해운대구청장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년 4월 5일 ~ 4월 24일 (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백철 (해운대구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김삼현 (세무사)
 - 검 사 위 원 : 김대일 (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박도근 (전직 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검사위원

목 차

□ 결산개요	5
1. 자치단체 일반현황	5
2. 회계현황	5
3.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6
4. 기금결산 요약	8
5. 재무제표 요약·분석	9
□ 2018회계연도 결산서 검사 결과	12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건전성	12
2. 세입·세출의 결산	13
(1) 총괄	13
(2) 일반회계	14
(3) 특별회계	22
(4)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25
(5)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25
(6) 예비비 지출	26
3. 기금의 결산	27
4. 재무제표의 결산	29
5. 성과보고서	33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34
(1) 채권	34
(2) 채무	35
(3)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35
(4) 공유재산	36
(5) 물품	36
(6) 지방세 지출 보고서	37
(7) 성인지 결산서	38
7. 계약의 결산	38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41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41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49
3. 기금결산 분야	53
4.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54
5. 성인지예산 분야	56
6. 기타 권고사항	57
□ 2017회계연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65

결산검사의견서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4월 5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이 정함에 따라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 증빙서류, 관계직원의 직접설명 등을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검사하였으며, 일부 계산상의 오류 및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를 통해 행정수행사항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합당한 예산집행으로 지역발전과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24일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백철	
위 원	김삼현	
위 원	김대일	
위 원	박도근	

□ 결산개요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1. 기본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면적	시·군·구	동				전년도인구수		현년도인구수	
			행정동	법정동	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51.46km ²	1	18	8	488	3,669	165,002	412,039	166,748	409,347

2. 행정조직

(단위: 개소/ 명)

구 분	실	국	본부	담당관	실·과	사업소	기타	공무원수
행정조직	1	4	-	1	1실 21과	3	1단 1보건소 18동 1의회	992

3. 공무원 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지방직				국가직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현원	992	991	-	1	-	-

제2장 회계현황

1. 현 황

해운대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6개 및 기금 7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해운대구의 회계현황]

회계	종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일반회계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일반적인 재정운영활동 수행
기타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의 명확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조례	지하수 수질관리와 고갈방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조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조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
기금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 도모 및 식품산업진흥발전 기여
	사회복지기금	조례	저소득층자활자립기여 및 노인복지증진
	자활기금	조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양성평등기금	조례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재난관리기금	조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신청사건립 추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 ·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요약

-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 총세입은 620,667백만원, 총세출은 533,010백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87,657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620,667	533,010	87,657	39,051	5,557	43,049
일반회계	595,903	522,636	73,267	36,839	5,250	31,178
기타특별회계	24,764	10,374	14,390	2,212	307	11,871

-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0.6% 낮으며, 잉여금의 경우 금액과 증가율 모두 완만한 증가 추세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459,521	512,020	564,011	599,989	620,667	7.8	
세출(B)	404,215	444,125	470,911	521,631	533,010	7.2	
잉여금 (A-B)	소 계	55,306	67,894	93,100	78,359	87,657	12.2
	이 월 금	24,422	26,398	47,820	34,251	39,051	12.5
	보 조 금 집행잔액	3,168	5,059	5,354	6,282	5,557	15.1
	순 세 계 잉 여 금	27,715	36,437	39,925	37,825	43,049	11.6

2. 세입세출결산 분석

가. 세입결산(재원별 현황)

- 2018회계연도 세입은 620,6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678백만원(3.45%)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조금임.
- 총 620,667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7.17%와 60.2%임.
- 자체수입 총 168,630백만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은 각각 73.37%와 26.63%이며, 이전수입 총 373,671백만원 중 보조금이 329,850백만원(88.27%)으로 가장 높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전년대비 (%)	2018	전년대비 (%)
계	564,011	599,989	106.38	620,667	103.45
자체수입	143,905	148,409	103.13	168,630	113.62
지방세	99,775	104,520	104.76	123,718	118.37
세외수입	44,130	43,889	99.45	44,912	102.33
이전수입	352,211	358,061	101.66	373,671	104.36
지방교부세	10,917	8,368	76.65	12,067	144.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9,776	41,451	104.21	31,755	76.61
보 조 금	301,518	308,242	102.23	329,850	107.0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67,894	93,520	137.74	78,366	83.8

나. 세출결산(기능별 현황)

- 세출은 533,0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379백만원(2.18%)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60.13%), 기타(15.8%)임.
-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25.68%)과 공공질서 및 안전(10.97%) 분야임.
- ※ 총 613,148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533,010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6.93%임(총계기준).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구성비 (%)	2017	구성비 (%)	전년대비 (%)	2018	구성비 (%)	전년대비 (%)
계	470,911		521,631		10.77	533,010		2.18
일반회계	457,884	100	511,539	100	11.72	522,636	100	2.17
일반공공행정	19,386	4.23	23,865	4.66	23.11	20,587	3.93	△13.74
공공질서및안전	8,038	1.75	12,686	2.47	57.82	14,077	2.69	10.97
교육	3,934	0.85	8,008	1.56	103.55	6,873	1.31	△14.17
문화및관광	11,444	2.49	14,996	2.93	31.04	18,847	3.60	25.68
환경보호	19,931	4.35	23,171	4.52	16.26	21,699	4.15	△6.36
사회복지	277,468	60.59	296,875	58.03	6.99	314,235	60.12	5.85
보건	11,917	2.60	13,949	2.72	17.05	13,352	2.55	△4.28
농림해양수산	4,620	1.00	4,585	0.89	△0.76	3,614	0.69	△21.17
산업·중소기업	3,852	0.84	3,492	0.68	△9.34	927	0.17	△73.46
수송및교통	14,403	3.14	22,647	4.42	57.24	16,126	3.08	△28.8
국토및지역개발	10,317	2.25	11,491	2.24	11.38	9,716	1.85	△15.45
기타	72,575	15.85	75,773	14.81	4.41	82,583	15.80	8.99
특별회계	13,027		10,092		△22.54	10,374		2.8
기타특별회계	13,027		10,092		△22.54	10,374		2.8

제4장 기금결산 요약

- 우리 구의 2018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8,585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69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1,096백만원을 공제한 19,558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18,585	973	2,069	1,096	19,558
신청사건립기금	8,119	358	358	0	8,477
재난관리기금	4,707	597	1,008	411	5,304
사회복지기금	3,203	△144	57	202	3,058
자활기금	1,469	148	205	57	1,617
양성평등기금	505	△6	9	15	499
식품진흥기금	313	15	76	61	328
옥외광고발전기금	269	5	355	350	273

○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9.5% 높으며,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5.4% 증가함.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4,889	15,825	16,909	17,498	18,585	5.7
당해연도 조성액	1,506	1,916	1,512	2,023	2,069	8.3
당해연도 사용액	570	832	923	936	1,096	17.8
당해연도말 조성액	15,825	16,909	17,498	18,585	19,558	5.4

제5장 재무제표 요약·분석

1. 재무제표 요약

○ 2018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42,85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0,865백만원(37%) 감소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8년	1,919,203	32,922	1,886,281	541,209	501,082	△40,127
2017년	1,879,086	35,657	1,843,429	502,047	472,786	△29,262
증감	40,117	△2,735	42,852	39,162	28,296	△10,865

2.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886,281백만원, 전년 대비 42,852백만원(2.3%) 증가, 총자산은 1,919,20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0,117백만원(2.1%) 증가함.

< 최근 3년간 총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379,177	100	1,879,086	100	1,919,203	100
유동자산 ¹⁾	145,743	10.57	127,564	6.79	138,914	7.24
투자자산 ²⁾	4,095	0.3	3,808	0.2	3,987	0.21
일반유형자산 ³⁾	147,080	10.66	158,377	8.43	159,976	8.34
주민편의시설 ⁴⁾	262,979	19.07	336,233	17.89	347,110	18.09
사회기반시설 ⁵⁾	817,117	59.25	1,251,113	66.58	1,267,263	66.03
기타비유동자산 ⁶⁾	2,162	0.15	1,993	0.11	1,952	0.09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 2)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 3)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입목 등
- 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 5)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 6)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총부채는 32,92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35백만원(7.6%) 감소함.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33,641	100	35,657	100	32,922	100
유동부채 ¹⁾	12,545	37.29	14,550	40.81	14,419	43.8
장기차입부채 ²⁾	0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³⁾	21,096	62.71	21,107	59.19	18,502	56.2

-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 2)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나. 재정운영

-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40,127백만원, 전년 대비 10,865백만원(37%) 감소함.
- 총비용은 501,08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8,296백만원(5.9%) 증가함.
- 총수익은 541,20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9,162백만원(7.8%) 증가함.

<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¹⁾	81,206	18.29	85,549	18.09	89,846	17.93
운영비 ²⁾	77,105	17.36	93,350	19.74	83,760	16.72
정부간이전비용 ³⁾	785	0.18	1,699	0.36	4,737	0.95
민간등이전비용 ⁴⁾	269,200	60.62	276,377	58.46	304,799	60.83
기타비용 ⁵⁾	15,748	3.55	15,811	3.35	17,938	3.57
계	444,044	100	472,786	100	501,082	100
자체조달수익 ⁶⁾	153,971	30.77	150,377	29.95	172,959	31.96
정부간이전수익 ⁷⁾	346,328	69.22	351,531	70.02	368,066	68.01
기타수익 ⁸⁾	60	0.01	139	0.03	184	0.03
계	500,359	100	502,047	100	541,209	100
재정운영결과	△56,315		△29,261		△40,127	

- 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 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 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 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 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 6)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 7)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 8)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 2018회계연도 결산서 검사 결과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 대한 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98호 2011.10.12.)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등의 지표가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해운대구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채무 관리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0%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0%	$\frac{\text{지방채무 상환액}}{\text{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113.15%	$\frac{\text{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101.5%	$\frac{\text{당해연도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 해운대구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지는 않음.
-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다음과 같음.

$$\text{재정자립도} = 27.6\% = \left[\frac{154,089,787 \text{원}}{558,196,807 \text{원}} \times 100 \right] = \left[\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 지방세 : 보통세 + 지난연도수입 = 121,088,000원
-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33,001,787원

$$\text{재정자주도} = 35.1\% = \left[\frac{195,931,980 \text{원}}{558,196,807 \text{원}} \times 100 \right] = \left[\frac{\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121,088,000원 + 33,001,787원
- 자주재원 : 자체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154,089,787원 + 10,063,440원 + 31,778,753원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원)

회 계 별	예 산 액	성립후증감액	예 산 현 액	수납액(A)	지출액(B)
합계	578,897,082,000	34,251,074,130	613,148,156,130	620,666,996,475	533,010,174,850
일 반 회 계	558,196,807,000	31,619,584,510	589,816,391,510	595,903,174,700	522,636,212,670
특 별 회 계	20,700,275,000	2,631,489,620	23,331,764,620	24,763,821,775	10,373,962,180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C=A-B)	결산상 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계	87,656,821,625	25,712,780,140	7,034,546,590	6,303,710,480	5,556,871,118	43,048,913,297
일 반 회 계	73,266,962,030	23,781,693,290	6,754,001,650	6,303,710,480	5,250,045,498	31,177,511,112
특 별 회 계	14,389,859,595	1,931,086,850	280,544,940	0	306,825,620	11,871,402,185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20,666,996,475원으로 예산현액 613,148,156,130원보다 7,518,840,345원이 더 수납되었음.
- 지출액은 수납액의 85.88%인 533,010,174,85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7,656,821,625원임.
- 이 중 명시이월액 25,712,780,140원, 사고이월액 7,034,546,590원 및 계속비 이월액 6,303,710,480원과 보조금 반납금 5,556,871,118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048,913,297원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원)

과 목	순세계잉여금 [㉗= (㉔+㉕)-㉖]	초 과 세 입 금 ㉔	집 행 잔 액 ㉘				차 감 항 목 ㉙
			소 계	정 책 사 업	행 정 운 영 경 비	재 무 활 동	보 조 금 반 납 금
합계	43,048,913,297	7,518,840,345	41,086,944,070	38,419,022,780	2,568,084,790	99,836,500	5,556,871,118
일반회계	31,177,511,112	6,086,783,190	30,340,773,420	27,751,517,760	2,489,423,270	99,832,390	5,250,045,498
특별회계	11,871,402,185	1,432,057,155	10,746,170,650	10,667,505,020	78,661,520	4,110	306,825,620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43,048,913,297원임이 확인됨.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589,816,391,510	617,039,282,530	595,903,174,700	3,619,609,600	17,516,498,230
결산확인액	589,816,391,510	617,039,282,530	595,903,174,700	3,619,609,600	17,516,498,230
차액	0	0	0	0	0

- 실제수납액 595,903,174,700원은 예산현액의 101.03%로서 6,086,783,19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7%로 전년도 96.6%보다 0.1%가 증가 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619,609,600원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95,903,174,700	595,903,174,700	0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대비징수결정액	징수결정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불납결손율
2018	558,196,807,000	617,039,282,530	595,903,174,700	3,619,609,600	58,842,475,530	△21,136,107,830	0.5%
2017	529,226,037,000	597,511,413,650	577,425,687,320	3,018,839,230	68,285,376,650	△20,085,726,330	0.5%
증감	28,970,770,000	19,527,868,880	18,477,487,380	600,770,370	△9,442,901,120	1,050,381,500	

-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577,425,687,320원보다 18,477,487,380원이 많은 595,903,174,700원이 수납되었음.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3,018,839,230원보다 600,770,370원이 증가한 3,619,609,600원임.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589,816,391,510	617,039,282,530	595,903,174,700	3,619,609,600	17,516,498,230	
지방세	소계	121,088,000,000	126,610,643,830	123,717,771,670	186,659,990	2,706,212,170
	등록면허세	21,848,000,000	23,016,990,030	22,959,774,700	55,620	57,159,710
	주민세	6,200,000,000	6,559,128,630	6,521,588,080		37,540,550
	재산세	91,800,000,000	94,720,413,170	93,234,602,920	11,182,410	1,474,627,840
	지방소득세					
	지난년도수입	1,240,000,000	2,314,112,000	1,001,805,970	175,421,960	1,136,884,070
세외수입	33,001,787,000	52,900,067,050	34,656,831,380	3,432,949,610	14,810,286,060	
경상	재산임대수입	82,447,000	326,288,580	281,176,260		45,112,320
	사용료수입	2,656,898,000	3,288,408,010	2,514,744,990		773,663,020
	수수료수입	8,926,373,000	9,398,418,610	9,383,529,110		14,889,500
	징수교부금수입	10,934,948,000	11,225,241,190	11,225,241,190		
	이자수입	862,000,000	1,250,269,110	1,250,269,110		
임시	재산매각수입	150,000,000	35,041,550	35,041,550		
	부담금	1,836,203,000	1,737,266,350	1,732,967,260		4,299,090
	과장금및과태료등	2,099,394,000	6,496,762,230	2,508,452,650	836,873,350	3,151,436,230
	기타수입	3,253,524,000	4,243,492,370	3,399,465,290		844,027,080
	지난년도수입	2,200,000,000	14,898,879,050	2,325,943,970	2,596,076,260	9,976,858,820
지방교부세	10,063,440,000	11,936,571,120	11,936,571,120			
조정교부금 등	31,778,753,000	31,754,555,000	31,754,555,000			
보조금	327,990,735,000	327,943,767,850	327,943,767,8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893,676,510	65,893,677,680	65,893,677,680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0.7%인 123,717,771,67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5.8%인 34,656,831,380원이 수납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2%인 11,936,571,120원, 조정교부금 등은 5.3%인 31,754,555,000원, 보조금은 55%인 327,943,767,850원이 수납되었음.

일반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법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일반 회계	17,516	3,280	1,051	3,511	680	33	40	10	8,887	21

- 미수납 총액 17,516,498,230원의 사유 중 관리에 따라 수납이 기대되는 납세태만 및 소송계류의 합이 3,551,669,680원으로 약 20.3%이고, 자금 압박의 경우 8,887,079,690원으로 50.7%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원)

구분	계	사유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기타
일반회계	1,073,951,110	294,111,480	6,462,270	262,640,370	89,587,150	421,149,840
지방세수입	618,876,340	264,839,560	5,817,880	258,631,750	89,587,150	
세외수입	47,127,770	29,271,920	644,390	4,008,620		13,202,840
보조금	407,947,000					407,947,000

- 당해연도 환급액은 1,073,951,110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행정기관착오 사유가 264,839,560원인 약 24.7%를 차지하고, 보조금 기타사유가 407,947,000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약 38.0%를 차지하고 있음.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결산액	558,196,807,000	31,619,584,510	589,816,391,510	522,636,212,670	36,839,405,420	5,282,019,789	25,058,753,631
결산확인액	558,196,807,000	31,619,584,510	589,816,391,510	522,636,212,670	36,839,405,420	5,282,019,789	25,058,753,631
차액	0		0	0	0		0

- 예산액은 558,196,807,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1,619,584,51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89,816,391,510원임.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22,636,212,670	522,636,212,670	0

일반회계 기능별 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589,816,391	522,636,212	100	36,839,405	23,781,693	6,754,001	6,303,710	30,340,773
일반공공행정	24,011,433	20,586,982	3.93	2,710,070	683,652	110,000	1,916,417	714,379
공공질서및안전	20,009,294	14,077,288	2.69	5,782,377	4,177,281	1,605,096		149,628
교육	6,881,683	6,873,326	1.31					8,357
문화및관광	22,925,156	18,847,428	3.60	3,661,097	3,558,957	102,140		416,630
환경보호	22,535,692	21,698,518	4.15	484,553	36,000	448,553		352,620
사회복지	326,726,679	314,234,779	60.12	6,799,360	1,367,168	1,044,899	4,387,292	5,692,539
보건	16,656,978	13,352,358	2.55	2,493,799	1,663,868	829,931		810,819
농림해양수산	4,618,832	3,613,916	0.69	853,163	245,432	607,731		151,752
산업·중소기업	1,669,482	926,742	0.17	713,730	438,470	275,260		29,010
수송및교통	23,423,077	16,125,954	3.08	6,876,756	5,754,510	1,122,246		420,365
국토및지역개발	16,960,158	9,715,805	1.85	6,389,659	5,781,516	608,143		854,693
예비비	18,250,552	0	0					18,250,552
기타	85,147,371	82,583,111	15.80	74,836	74,836			2,489,424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6%에 해당되는 522,636,212,6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5%에 해당되는 36,839,405,42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73건 23,781,693,290원 사고이월은 54건 6,754,001,650원 계속비이월은 4건 6,303,710,480원임.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14%에 해당하는 30,340,773,4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282,019,789원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 2018회계연도 국가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8	비율 (%)
보건복지고용	144.6	33.40
교육	64.2	14.83
문화체육관광	6.5	1.50
R&D	19.7	4.5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3.77
SOC	19.0	4.39
농림수산식품	19.7	4.55
환경	6.9	1.59
국방	43.2	9.98
외교통일	4.7	1.09
공공질서안전	19.1	4.41
일반지방행정	69.0	15.94
계	432.9	100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현황

(단위: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589,816,391,510	522,636,212,670	36,839,405,420	5,282,019,789	25,058,753,631
기획조정실	19,235,088,000	837,990,630	22,000,000	24,610	18,375,072,760
감사담당관	148,907,000	139,088,610			9,818,390
도시재생추진단	4,207,306,400	2,832,591,950	1,183,446,470	38,992,094	152,275,886
행정지원과	74,758,465,000	72,562,101,720			2,196,363,280
재무과	7,672,181,000	4,955,880,870	2,647,555,670		68,744,460
교육협력과	12,414,626,690	11,105,634,410	1,227,000,000	3,456,385	78,535,895
세무1과	842,148,000	819,991,260		2,894,475	19,262,265
세무2과	557,199,000	542,903,750			14,295,250
민원여권과	751,570,000	744,388,010		10,940	7,171,050

관광문화과	8,030,515,740	6,063,509,370	1,906,127,520	6,700,218	54,178,632
일자리창출과	15,668,327,180	14,492,933,440	541,878,950	61,681,520	571,833,270
경제진흥과	3,288,142,500	1,824,395,430	1,325,276,300	69,533,510	68,937,260
늘푸른과	12,133,916,500	6,382,649,740	5,283,913,170	3,251,131	464,102,459
복지정책과	30,371,010,000	29,137,397,810	32,387,460	1,028,259,429	172,965,301
주민복지과	63,070,571,000	60,994,716,650		1,987,519,386	88,334,964
행복나눔과	218,181,663,520	210,161,467,970	6,225,094,410	1,220,079,052	575,022,088
환경위생과	868,952,000	777,778,470		3,871,000	87,302,530
청소행정과	25,688,009,000	25,396,688,880	36,000,000	1,327,607	253,992,513
도시디자인과	10,825,424,250	9,734,003,060	810,037,150	5,212,209	276,171,831
안전총괄과	20,150,856,770	14,216,508,080	5,782,377,720	77,615,370	74,355,600
건설과	20,600,731,340	13,610,842,670	6,593,289,810	80,002,140	316,596,720
건축과	1,382,845,070	1,214,600,010	85,900,000	17,366,820	64,978,240
토지정보과	1,216,444,000	1,160,111,300			56,332,700
의회사무국	1,422,731,000	1,266,176,730			156,554,270
보건정책과	14,155,465,000	11,810,946,690	1,563,868,580	489,251,690	291,398,040
건강증진과	4,553,468,000	3,398,634,450	929,931,210	176,927,863	47,974,477
관광시설관리사업소	7,686,157,550	6,822,663,800	568,485,000	3,803,610	291,205,140
해운대문화회관	1,310,650,000	1,287,799,120			22,850,880
인문학도서관	3,496,605,000	3,477,841,970		4,238,730	14,524,300
우1동	281,070,000	277,013,160			4,056,840
우2동	249,964,000	243,275,910			6,688,090
우3동	224,249,000	218,621,640			5,627,360
중1동	257,084,000	250,036,040			7,047,960
중2동	263,669,000	249,801,160			13,867,840
좌1동	240,995,000	235,125,820			5,869,180
좌2동	252,593,000	245,888,910			6,704,090
좌3동	213,750,000	206,572,990			7,177,010
좌4동	391,733,000	304,848,580	74,836,000		12,048,420
송정동	211,752,000	203,138,420			8,613,580
반여1동	345,244,000	336,855,290			8,388,710
반여2동	327,643,000	304,951,700			22,691,300
반여3동	188,662,000	183,578,430			5,083,570
반여4동	189,262,000	186,607,490			2,654,510
반송1동	356,712,000	335,113,330			21,598,670
반송2동	392,495,000	376,271,680			16,223,320
재송1동	368,564,000	358,396,810			10,167,190
재송2동	370,974,000	347,878,460			23,095,540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원)

구 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합 계	23,331,764,620	34,597,827,599	24,774,684,555	10,862,780	24,763,821,775	341,775,760	9,492,230,064
주차장	18,529,478,620	28,264,118,349	19,999,707,409	10,862,780	19,988,844,629	331,910,830	7,943,362,890
의료급여기금	1,020,130,000	2,551,504,664	1,077,400,644		1,077,400,644	9,840,780	1,464,263,240
지하수관리	1,813,507,000	1,786,009,430	1,768,039,640		1,768,039,640		17,969,790
기반시설	324,558,000	325,871,920	325,871,920		325,871,920		
주거환경개선사업	212,128,000	231,040,196	164,381,902		164,381,902	24,150	66,634,14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431,963,000	1,439,283,040	1,439,283,040		1,439,283,040		
결산확인액	23,331,764,620	34,597,827,599	24,774,684,555	10,862,780	24,763,821,775	341,775,760	9,492,230,064
차 액	0	0	0	0	0	0	0

- 실제수납액 24,763,821,775원은 예산현액의 112.8%로서 2,811,919,155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71.6%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4%가 증가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341,775,760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시효소멸 등에 기인하였음.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사유별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기타
특별회계	9,492,230,064	1,332,244,760	8,025,458,764	132,018,480	2,508,060
주차장	7,943,362,890		7,943,362,890		
의료급여기금	1,464,263,240	1,332,244,760		132,018,480	
지하수관리	17,969,790		17,969,790		
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66,634,144		64,126,084		2,508,0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7.44%인 9,492,230,064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세태만, 무재산에 기인한 것임.

특별회계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원)

구 분	계	사유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기타
주차장	10,862,780							10,862,780

- 당해연도 특별회계의 환급액은 사유는 납세자 이중납부, 비부과 등이 차지.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4,763,821,775	24,763,821,775	0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성립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합 계	20,700,275,000	2,631,489,620	23,331,764,620	10,373,962,180	2,211,631,790	306,825,620	10,439,345,030
주차장	17,277,851,000	1,251,627,620	18,529,478,620	7,925,609,110	2,211,631,790	262,151,700	8,130,086,020
의료급여기금	1,020,130,000	0	1,020,130,000	972,104,780		41,123,340	6,901,880
지하수관리	1,813,507,000	0	1,813,507,000	48,965,270			1,764,541,730
기반시설	324,558,000	0	324,558,000	0			324,558,000
주거환경개선사업	212,128,000	0	212,128,000	2,174,700			209,953,3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2,101,000	1,379,862,000	1,431,963,000	1,425,108,320		3,550,580	3,304,100
결산확인액	20,700,275,000		23,331,764,620	10,373,962,180	2,211,631,790	306,825,620	10,439,345,030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20,700,275,000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2,631,489,62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3,331,764,620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 및 이용 사실은 없었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4.46%에 해당하는 10,373,962,180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931,086,850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74%에 해당하는 10,439,345,030원이었음.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0,373,962,180	10,373,962,180	0

(4)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8회계연도의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다음과 같음.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원)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	이월액	내역	이월액	내역	이월액	
합 계	4건	6,303,710,480	76건	25,712,780,140	56건	7,034,546,590	
일반회계	좌4동 문화센터 건립 외 3건	6,303,710,480	청사포 몽돌해변 마스터플랜 용역 외 72건	23,781,693,290	반여동 이야기가있는 무지개길 조성 외 53건	6,754,001,650	
특별회계		-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외 2건	1,931,086,850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외 1건	280,544,940	

(5)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건수	금액
예산이용	일반회계		없음
	특별회계		
예산전용	일반회계	24	192,095,000원
	특별회계	1	1,928,000원
예산이체	일반회계	54	4,227,764,400원
	특별회계	0	-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사용하였음.

(6) 예비비 지출

2018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회 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합 계	18,451,070,000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일반회계	18,344,170,000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특별회계	106,900,000				

(단위: 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
합 계	93,618,000	45,449,600	45,000,000	3,168,400
도시재생추진단-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연구용역비	48,000,000		45,000,000	3,000,000
재무과-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청사노후시설교체및정비-자산및물품취득비	21,218,000	21,218,000		
의회사무국-의사운영- 의사운영지원-시설비	2,000,000	1,905,000		95,000
의회사무국-의사운영- 의사운영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	2,400,000	2,326,600		73,400
안전총괄과-재난복구능력강화- 재난지원금지급-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000,000	20,000,000		

3. 기금의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기금현황

(단위: 원)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증감비율 (㉒-㉑)/㉑
		계 ㉓=㉔-㉕	조성액 ㉔	사용액 ㉕		
계	18,584,927,704	972,858,699	2,068,512,489	1,095,653,790	19,557,786,403	5.2
식품진흥기금	313,115,840	15,039,090	76,484,970	61,445,880	328,154,930	4.8
사회복지기금	3,202,972,503	△144,497,190	57,148,310	201,645,500	3,058,475,313	△4.5
자활기금	1,469,129,437	148,305,083	204,890,083	56,585,000	1,617,434,520	10
양성평등기금	505,122,734	△5,922,584	9,077,416	15,000,000	499,200,150	△1.1
재난관리기금	4,706,641,426	597,460,220	1,008,036,970	410,576,750	5,304,101,646	12.6
신청사건립기금	8,119,401,224	357,919,900	357,919,900		8,477,321,124	4.4
육외광고발전기금	268,544,540	4,554,180	354,954,840	350,400,660	273,098,720	1.6

- 2018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8,584,927,704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068,512,489원을 더하고 사용액 1,095,653,790원을 공제한 19,557,786,403원임.

기금운용내역

(단위: 원)

구분	수입					
	계	전입금	용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20,653,440,193	1,462,736,000	112,750,472	18,584,927,704	350,637,277	142,388,740
식품진흥기금	389,600,810			313,115,840	5,320,970	71,164,000
사회복지기금	3,260,120,813		6,416,832	3,202,972,503	50,731,478	
자활기금	1,674,019,520		106,333,640	1,469,129,437	27,331,703	71,224,740
양성평등기금	514,200,150			505,122,734	9,077,416	
재난관리기금	5,714,678,396	912,736,000		4,706,641,426	95,300,970	
신청사건립기금	8,477,321,124	200,000,000		8,119,401,224	157,919,900	
육외광고발전기금	623,499,380	350,000,000		268,544,540	4,954,840	

(단위: 원)

구 분	지출				
	계	비음자성사업비	음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
계	20,653,440,193	952,057,940	30,000,000	113,595,850	19,557,786,403
식품진흥기금	389,600,810	61,445,880			328,154,930
사회복지기금	3,260,120,813	201,645,500			3,058,475,313
자활기금	1,674,019,520	26,585,000	30,000,000		1,617,434,520
양성평등기금	514,200,150	15,000,000			499,200,150
재난관리기금	5,714,678,396	410,576,750			5,304,101,646
신청사전립기금	8,477,321,124				8,477,321,124
육외광고발전기금	623,499,380	236,804,810		113,595,850	273,098,720

- 검사결과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의 지출액은 20,653,440,193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4,889	15,825	16,909	17,498	18,585	5.7
당해연도 조성액	1,506	1,916	1,512	2,023	2,069	8.3
당해연도 사용액	570	832	923	936	1,096	17.8
당해연도말 조성액	15,825	16,909	17,498	18,585	19,558	5.4

4. 재무제표의 결산

2018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음.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919,202,784,141	1,879,086,315,502	40,116,468,639	2.1
I. 유 동 자 산	138,914,163,992	127,563,543,963	11,350,620,029	8.9
II. 투 자 자 산	3,987,127,970	3,807,727,970	179,400,000	4.7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59,976,388,190	158,376,657,777	1,599,730,413	1.0
IV. 주 민 편 의 시 설	347,109,732,613	336,233,195,116	10,876,537,497	3.2
V. 사 회 기 반 시 설	1,267,263,227,752	1,251,112,639,576	16,150,588,176	1.3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952,143,624	1,992,551,100	△40,407,476	△2.0
부 채	32,921,676,259	35,656,975,287	△2,735,299,028	△7.7
I. 유 동 부 채	14,419,498,859	14,550,228,035	△130,729,176	△0.9
II. 장 기 차 입 부 채	0	0	0	0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8,502,177,400	21,106,747,252	△2,604,569,852	△12.3
순 자 산	1,886,281,107,882	1,843,429,340,215	42,851,767,667	2.3
I. 고 정 순 자 산	1,766,552,655,729	1,737,230,786,299	29,321,869,430	1.7
II. 특 정 순 자 산	20,128,461,856	19,223,393,667	905,068,189	4.7
III. 일 반 순 자 산	99,599,990,297	86,975,160,249	12,624,830,048	14.5

○ 2018회계연도 말 해운대구의 자산은 1조 9,192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8,790억원보다 401억원(2.1%) 증가하였음.

▶ 자산 주요 증가내역

- 유동자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작년 대비 7,803백만원(26.9%) 증가,
- 유동자산 중 단기금융상품이 작년 대비 2,467백만원(3.6%) 증가
-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가 작년 대비 3,071백만원(3%) 증가
- 주민편의시설 중 도서관이 작년 대비 10,176백만원(48%) 증가
- 주민편의시설 중 문화및관광시설이 작년 대비 3,698백만원(11.6%) 증가
- 주민편의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이 작년 대비 2,518백만원(6.4%) 증가
- 주민편의시설 중 기타주민편의시설이 작년 대비 3,101백만원(9.2%) 증가
-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가 작년 대비 6,444백만원(0.5%) 증가.

○ 반면, 2018회계연도 말 해운대구의 부채는 329억원으로 전년도의 356억원 보다 27억원(7.7%) 감소하였음.

▶ 부채 주요 감소내역

- 기타유동부채 중 일반미지급금(보조금 미반납액)이 작년 대비 923백만원(14%)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작년 대비 1,907백만원(16.7%)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 중 장기BTL미지급금이 작년 대비 696백만원(7.2%) 감소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해운대구는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훈령 제 185호)에 따라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집행의 최종 결과표인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게 되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단위: 원, %)

구 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 순원가 (가 - 나)	69,715,769,924	67,363,350,423	2,352,419,501	3.5
가. 사업 총원가	403,353,597,533	380,759,437,453	22,594,160,080	5.9
나. 사업 수익	333,637,827,609	313,396,087,030	20,241,740,579	6.5
II. 관리 운영비	84,839,789,718	81,385,475,056	3,454,314,662	4.2
III. 비배분비용	12,888,205,785	10,640,707,574	2,247,498,211	21.1
IV. 비배분수익	10,221,779,175	6,508,720,567	3,713,058,608	57.0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57,221,986,252	152,880,812,486	4,341,173,766	2.8
VI. 일반수익	197,349,191,012	182,142,486,861	15,206,704,151	8.3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40,127,204,760	△29,261,674,375	△10,865,530,385	37.1

- 해운대구의 2018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033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336억원을 차감한 697억원이며, 총 114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노인복지 지원’ (97억원)와 ‘선진 청소서비스 제공’ (88억원), ‘보육가족지원’ (62억원)이었음.
- 또한, 2018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13억원과 기타 관리운영비 3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74억원과 대손상각비 3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경상세외수익 18억원, 임시세외수익 43억원, 기타비배분수익 4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8회계연도 해운대구의 재정운영결과는 △401억원으로 전년도의 △292억원보다 109억원(37%)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대비 사업순원가는 23억원(3.5%), 관리운영비는 34억원(4%), 비배분비용은 22억원(21%) 증가하였으나, 비배분수익이 37억원(57%), 일반수익이 152억원(57.8%)으로 더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단위: %, 원)

분야	지 표 명	산 식	2018	2017
재정 상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	1.72%	1.90%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29.53%	29.33%
	③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 비율	부채 / 유형고정자산 × 100 ※ 부채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0.81%	0.83%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65.69%	70.10%
	⑤ 현금창출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24.83%	29.26%
	⑥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재정자금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장·단기 금융상품	9.07%	10.79%
	⑦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10.38%	11.41%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4.43%	3.62%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52.70%	79.32%
재정 운영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 100	86.93%	87.48%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89.70%	99.57%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0.24%	0.20%
	④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23.08%	21.37%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35.76%	35.79%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100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77.36%	72.27%
	⑦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자체조달수익 ×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14.28%	16.15%
	⑧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세외수익 × 100 ※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45.14%	47.68%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34.65%	37.84%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7.27%	10.82%
회계 책임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4,688,450	4,560,457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80,425	86,538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80,425	86,538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1,322,127	1,218,446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422,525	364,959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302,862	254,280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1,224,100	1,147,429
	⑧ 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744,599	670,755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506,512,679	484,367,867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468,957,972	456,136,633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총급여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53,758,874	51,561,189

5. 성과보고서

- 해운대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해운대구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 에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목표(88개)-단위사업(176개)’ 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8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결산액		
		개 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계	10	88	176	157	19	89.2	533,027,818,840	521,671,679,130	11,356,139,710
기획조정실	1	4	7	7	0	100	837,990,630	691,937,760	146,052,870
감사담당관	1	1	1	1	0	100	139,088,610	112,839,320	26,249,290
도시재생추진단	1	2	2	2	0	100	2,832,591,950	0	2,832,591,950
행정관리국	1	19	35	34	1	97.1	90,731,517,670	89,157,596,390	1,573,921,280
일자리산업국	1	19	39	29	10	74.3	38,114,394,450	49,457,249,210	△11,342,854,760
주민생활지원국	1	21	37	33	4	89.1	327,456,805,860	304,734,443,210	22,722,362,650
안전도시국	1	13	28	27	1	96.4	39,987,391,090	45,522,679,060	△5,535,287,970
의회사무국	1	1	4	4	0	100	1,266,176,730	1,264,550,970	1,625,760
보건소	1	3	10	8	2	80	15,209,581,140	15,230,981,870	△21,400,730
사업소	1	5	13	12	1	92.3	11,588,304,890	10,489,944,300	1,098,360,590
동사무소	0	0	0	0	0	0	4,863,975,820	5,009,457,040	△145,481,220

- 해운대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등 4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일자리산업국 74.3%, 주민생활지원국 89.1%, 보건소는 80%를 달성하였음.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회계별 총괄)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5,653,025,460	185,124,280	195,301,452	5,642,848,288
일반회계	3,631,299,920	343,000	6,448,230	3,625,194,690
특별회계	1,400,318,710	135,047,280	71,102,750	1,464,263,2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00,318,710	135,047,280	71,102,750	1,464,263,240
기금	621,406,830	49,734,000	117,750,472	553,390,358
사회복지기금	261,406,830	13,400,360	11,416,832	263,390,358
자활기금	360,000,000	36,333,640	106,333,640	290,000,000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42,848,288원으로 확인되었음.

채권현황 (채권종류별 · 사업별)

(단위: 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 계	5,642,848,288	3,625,194,690	1,464,263,240	553,390,358
보증 금 채권	소 계	25,425,000	25,425,000	0
	사무실임대	15,261,000	15,261,000	0
	전화선예치금	10,164,000	10,164,000	0
용자 금 채권	소 계	4,137,754,828	3,584,364,470	553,390,358
	공무원 학자대여금	3,584,364,470	3,584,364,470	0
	사회복지·자활기금 용자금	553,390,358	0	553,390,358
기타 채권	소 계	1,479,668,460	15,405,220	1,464,263,240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1,464,263,240	0	1,464,263,240
	일반미수금	15,405,220	15,405,220	0

(2) 채무

-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1,600,000,000	1,400,000,000	0	0	0	
공채 b	0	0	0	0	0	
차입금 c	1,600,000,000	1,400,000,000	0	0	0	
채무부담행위 d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 e	0	0	0	0	0	
채무총합계 f(a+e)	1,600,000,000	1,400,000,000	0	0	0	

- 채무가 2016년에 소멸한 것은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채무 상환에 따른 것임.

(3)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합계	5,866,055,672	911,962,230	20,782,968,930	19,871,006,700	6,778,017,902
보증금	91,138,475	7,954,950	374,834,220	366,879,270	99,093,425
보관금	5,499,080,006	1,008,112,680	20,353,254,120	19,345,141,440	6,507,192,686
잡종금등 기타	275,837,191	△104,105,400	54,880,590	158,985,990	171,731,791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866,055,672원에서 911,962,23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778,017,902원임.

(4) 공유재산

2018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289,400,146,400	39,147,839,066	9,983,086,166	1,318,564,899,300	
행정 재산	공용재산	252,630,622,781	4,757,634,550	864,843,670	256,523,413,661
	공공용재산	1,017,026,609,229	33,995,525,396	9,055,169,496	1,041,966,965,129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소 계	1,269,657,232,010	38,753,159,946	9,920,013,166	1,298,490,378,790
일반재산	19,742,914,390	394,679,120	63,073,000	20,074,520,510	

(5) 물품

2018회계연도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음.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1,108	89	61	1,136
금 액	7,323,941,194	389,027,280	193,270,572	7,519,697,902

-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195,756,708원이 증가한 7,519,697,902원이 확인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화물트럭, 냉난방기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

(6) 지방세 지출 보고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8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41,851,708,290
	비과세	35,708,786,460
	감면	6,142,921,830
지방세 징수액(B)		123,717,771,670
비과세·감면율(A/A+B)		25.28

지방세 비과세·감면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7년(결산)	‘18년(결산)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24,633,403,320	27,668,631,950	3,035,228,630
국가에 대한 비과세	6,585,464,950	7,463,876,360	878,411,41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38,302,860	715,217,410	176,914,55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1,298,307,030	1,415,916,770	117,609,74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표지에 대한 비과세	293,656,360	377,843,880	84,187,52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중에 대한 감면	151,241,240	223,969,820	72,728,58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588,144,670	1,650,834,320	62,689,6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286,885,380	336,559,510	49,674,13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230,110,540	277,888,050	47,777,51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68,064,400	104,693,510	36,629,11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299,491,340	331,809,390	32,318,05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33,853,440	0	△33,853,440
영농자금 등의 용자지원을 위한 감면	31,699,430	5,593,020	△26,106,410

(7) 성인지 결산서

(단위: 개, 원)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계	21	13,330,699,000	12,944,533,780	97.10 %
일반회계	21	13,330,699,000	12,944,533,780	97.10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금	0	0	0	0.00 %

- 2018회계연도 성인지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13,330,699,000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며, 12,944,533,780원이 집행되어 97.1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7. 계약의 결산

계약절차나 내용은 법령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사나 물자, 용역 등의 계약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정부부문의 계약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강조 됨. 주민의 입장에서 계약의 집행에 공정성이나 합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함.

경쟁입찰은 수의계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경쟁으로 하나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소기업·소상공인, 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설비 등 제한요건이 붙으면 제한경쟁으로 하게 됨.

다만, 경쟁입찰로 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음.

(1) 수의계약 범위

○ 근거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구 분	공 사			용역·물품·기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 기타공사	
2인견적(견적입찰)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 당해연도 계약 유형별 구분 (2018회계연도)

(단위: 원)

계약 유형	수의계약			경쟁입찰			계
	1인견적	2인이상	소계	일반	제한	소계	
건수	1,262	21	1,283	832	91	923	2,206
비율			58.2%			41.8%	100%
금액	17,995,000,000	15,795,173,060	33,790,173,060	15,328,068,830	16,800,731,840	32,128,800,670	65,918,973,730
비율			51.3%			48.7%	100%

(3)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 (2018회계연도)

(단위: 백만원)

구분	공사		용역		물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계약	262	20,002	726	7,830	1237	23,654
수의계약	167	2,959	672	5,390	423	9,646
비율(%)	63.74	14.79	92.56	68.84	34.20	40.78

수익계약 1인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익계약을 하는 유형으로 금액기준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다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 또는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가·나·다·마목)에 따르거나 천재지변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4호 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인 경우에 가능함.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1) 이월예산 과다발생 지양

[현황 및 문제점]

- 결산상 이월액을 보면

(단위: 천원)

년도	예산현액	세출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예산 현액	세출
2017	596,311,024	521,630,842	34,251,074	21,732,356	7,863,558	4,655,160	5,74 %	6,56 %
2018	613,148,156	533,010,174	39,051,037	25,712,780	7,034,547	6,303,710	6,03 %	7,03 %

- 위와 같이 2018년도의 이월액은 2017년도에 비하여 4,799,963천원 증가.
-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보조금의 교부 지연, 사업기간 부족, 보상금 협의 지연 등이 대다수이나 담당부서의 착수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도 있었음.
- 적기에 예산의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집행지연은 결국 주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임.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예산부서의 협조를 얻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하고
- 또한 명시이월을 활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바람.

(2) 예산 집행잔액의 과다

[현황 및 문제점]

- 예산 중 구비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5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과목 (사업명)	당초	변경	집행잔액 (반납액)
행정지원과	공무원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2,149,853	1,465,850	684,273
늘푸른과	대천근린공원숲속도서관조성사업	60,000	0	60,000
	반송근린공원조성사업	280,000	0	280,000
청소행정과	재활용품수집단체에대한장려금외2	131,014	74,898	56,116
	청소민간위탁수수료	12,323,074	12,056,463	266,611
	음식물쓰레기감량및안정적처리	3,600,296	3,186,749	413,547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청사포관광안내소부지매입	700,000	260,326	439,674

- 위에서 언급한 예산은 모두 구비로써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2,200,221천원임.
-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절감은 차량운행기록계(DTG)를 통한 차량운행 분석용역으로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전년 대비 3억5천만원 절감하는 구정혁신을 이루어 예산성과급을 지급받는 우수한 사례도 있었음.
- 사업추진상 부득이 한 경우도 있겠으나, 계획의 착오 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현상으로 다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개선 및 권고사항]

- 보다 계획적이고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건설공사 예산의 이월 과다에 따른 대책 강구

[현황 및 문제점]

건설과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2019년도로 이월된 공사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	공사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1	건설과	재송1동3통주변 도로개설	650,903	174,920	보상협의진행중
2	건설과	반여4동삼어마을 도로개설	2,240,859	1,998,160	보상협의진행중
3	건설과	좌동재래시장내 도로개설	3,093,525	198,741	보상절차중
4	건설과	반여동우회 도로개설	500,000	500,000	2018년12월보조금수령
5	건설과	반여동소로1-12호선 도로개설	1,000,000	101,399	1회추경 공사중
6	건설과	우동중로3-93호선 도로개설	90,000	89,062	공사중
7	건설과	도시계획관리	500,975	325,547	용역중
8	건설과	애향길 일원 도로정비	600,000	600,000	지중화사업, 애향길공모 사업연계
9	건설과	재송동 일원보행 환경개선	300,000	300,000	7,31-1회추경 설계용역중
10	건설과	반여2·3동 일원 도로정비	300,000	264,732	7,31-1회추경 설계용역중
11	건설과	장산중학교앞 교차로정비	200,000	200,000	7,31-1회추경 공사중
12	건설과	반송근린공원 진입로정비	150,000	150,000	7,31-1회추경 설계용역중
13	건설과	해운대구급경사지 정비사업	350,000	350,000	7,31-1회추경
14	건설과	우동노후하수 관로정비	300,000	300,000	2018년9월,보조금수령, 공사중
합 계			10,276,262	5,552,561	

-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 중 이월된 공사 예산액은 총14건에 5,552,561천원임. 이월사유를 보면 보상협이나 보조금이 늦게 교부됨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공사도 있으나 9번부터 13번까지의 공사는 건설과 토목팀 직원1명이 담당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불가함.
- 건설공사의 대부분 집행절차는 공사현장을 조사후 설계용역 계약 의뢰 → 재무과에서 용역 계약 → 용역회사 설계 납품 → 공사감독 설계서 검토 → 현장 확인 → 설계서 수정 요구 → 설계서 수정 보완 납품 → 공사시행 품의, 계약의뢰 → 공사시행 계약자 결정 → 공사감독 → 준공 → 준공검사 → 공사대금 지급
-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한명의 공사감독이 담당하기는 어려워 적기에 예산의 집행이 곤란하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정임.

[개선 및 권고사항]

- 토목직원의 업무량 과다로 이월공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대책으로 구청내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량을 파악 후 업무분장 검토, 건설과내 업무분장 검토 등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있길 바람.

(4) 지방세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 세외수입 환급액의 연도별 추이

(단위: 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현액	126,874,496,000	135,849,558,000	154,089,787,000
징수결정액	160,611,261,175	158,277,762,245	179,510,710,880
수납총액	134,427,824,065	139,312,270,245	159,040,607,160
환급본세	417,717,390	1,104,852,310	648,031,950
환부이자	14,025,010	15,381,920	17,972,160
환급액합계	431,742,400	1,120,234,230	666,004,110
수납총액대비환급액비율	0.32%	0.80%	0.42%
실제수납액	133,996,081,665	138,192,035,915	158,374,603,050
결손액	2,863,534,720	3,018,839,230	3,619,609,600
다음연도이월액	23,751,644,790	17,066,887,100	17,516,498,230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환급액은 전년대비 454,230,120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입총액대비 환급비율도 2017년대비 감소추세임.

환급사유별 내역

(단위: 원)

구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합계
행정기관착오	264,839,560	29,271,920	294,111,480
납세자권리구제	5,817,880	644,390	6,462,270
납세자착오	258,631,750	4,008,620	262,640,370
차량미등기	89,587,150		89,587,150
기타		13,202,840	13,202,840
합계	618,876,340	47,127,770	666,004,110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에 의한 과오납 발생에 대한 관리는 계속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력 낭비만이 아니라 재정손실로도 연결되는바 발생의 최소화 내지 억제가 필요함.

(5) 각종 학술연구용역 자제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학술연구 용역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용역명	예산액	비고
기획조정실	인구감소대응정책발굴용역	22,000	
	데이트개방과 이용활성화 용역	20,000	
관광문화과	아쿠아리움관리이행계획수립용역	50,000	제2회추경시삭감
	해운대모래축제운영평가용역	9,500	
	수영강르네상스프로젝트용역	50,000	
	해운대문화관광자원개발용역	46,500	
경제진흥과	해운대구상권활성화방안조사용역	22,000	
복지정책과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	22,000	
행복나눔과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	20,000	

- 설계용역 등 기술용역은 행정예 바로 활용되는 반면 학술연구용역은 그 활용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미흡한 경우가 많고 때로는 1회용으로 활용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음.
-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은 국가정책의 화두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책이고 해운대구 상권 활성화 용역,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 인권증진 기본계획 등은 자칫 활용도가 낮아 사장 될 우려가 있음.
- 아쿠아리움 관리 이행 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편성후 상급부서에 확인한 바 필요치 않다는 회신을 받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예산을 삭감함.

[개선 및 권고사항]

- 학술 및 연구용역을 관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용역을 한 경우 용역 결과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하길 바라며,
- 아쿠아리움 관리 이행 계획의 수립 용역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보다 더 연찬하길 바람.

(6) 결산추경 예산 편성의 비생산적인 편성 지양

[현황 및 문제점]

-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세입을 추계하여 부서별 예산 편성 요구액을 받아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세수의 증대와 함께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의 신규 발생, 사유 소멸, 사업 축소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결산추경 예산 편성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상급 감사부서의 지적이나 구의회에서 예산·결산 감사나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을 받고 그 다음해 예산 편성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결산추경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편성된 예산을 집행 후 잔액을 삭감 요청함.
- 추경예산에서 삭감요청을 함으로써 가용재원이 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 필요한 다른 예산을 편성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겠으나 위에서 지적한 사유로 예산 삭감 요청을 하는 경우가 허다함.
- 예산 집행잔액 중 잔액이 다소 많은 집행 잔액은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예산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그러나 결산추경시 어느 예산을 삭감하여 또 다른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연말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거의 불가하여 가용재산 확보가 의미가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 후 그 다음연도 1회 추가경정 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함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로 예산을 증·감하는 경우나 시급한 사업은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시키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할 것임.
- 각 부서별 연말 결산추경 예산편성 삭감 요구시 소액 삭감을 요구한 부서 중 표본으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3개 부서의 300천원 이하 삭감 요구액은 다음과 같음.

결산추경시 3개 부서의 예산 삭감 요구액(목별 300천원 이하)

(단위: 천원)

부서별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삭감요구액
기획조정실	사회복무요원중식비	1,440	1,584	144
	사회복무요원교통비	624	687	63
	평가업무수행종합평가보고서	1,250	1,500	250
	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2,640	2,798	158
	인구감소대응정책발굴용역	21,900	22,000	100
	데이트개방과이용활성화용역	19,900	20,000	100
감사담당관	차량유지비	1,500	1,680	180
	자산및물품취득비	484	660	176
	자산및물품취득비	146	170	24
행정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81	188	107
	주민등록업무우수직원상장	0	40	40
	통반장역량강화	4,996	5,000	4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재근로자보수	2,952	3,065	113
	사무용품비	547	600	53

[개선 및 권고사항]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산 추경예산 편성 중 소액 삭감 요구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음.
- 각 부서에서는 연말 결산 추경시 소액의 예산 삭감 요구를 지양하고 긴급한 예산이나, 연말 지출원인행위가 필요한 예산,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이나 명시이월이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함이 바람직함.

2.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

(1)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 22일자 시행) 제3장 등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원)

연도	건수	금액
2018년	23,138	1,485,980,400
2017년	15,098	752,440,720
2016년	11,948	678,077,820
2015년	10,802	698,296,690
2014년	10,605	689,380,910
2013년	9,737	654,183,110
2008년~2012년	34,998	1,449,756,010
2008년 이전	37,166	1,486,640,000
합계	153,492	7,894,755,660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50회 이상) 현황

(단위: 원)

연번	자동차번호	소유자	위반횟수
1	14*****	노**	50
2	79*****	홍**	57
3	84*****	김**	117
4	35*****외 2대	정**	99
5	22*****외 61대	***(주)	71
6	29*****외 3대	***(주)	52
7	72*****외 6대	***(주)	56
8	48*****외 50대	***(주)	51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는 2018년 1월 29일 과태료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 전체에 대하여 연 6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수시로 차량압류 및 차량대체압류 조치하였음. 또한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압류예고 및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조치를 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주정차과태료가 발생하면 당해연도에 과태료 발생금액의 약 70%가 징수되고 각 연도의 주정차과태료발생액의 13%정도가 장기적인 미수납액으로 남게 됨.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징수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징수절차를 취하기 위한 과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

(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1,464,263,240원이며, 이중 구상금 채권은 203,452,400원, 부당이득금은 1,260,810,840원임. 구상금채권의 72.7%는 이**(147,971,500원)으로 현재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기타 채무자들도 채소자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움.
- 부당이득금의 경우는 대부분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분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거나 수감 중인 대상자가 많고 조회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움. 특히 **병원은 795,222,420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현재 대표자가 구치소 수감 중이고 무재산 상태임.
- 구상금은 상해발생 원인이 제3자의 행위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며, 부당이득금은 보건복지부 실사,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 상해요인, 방법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상해요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며, 방법변경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기관이 휴·폐업 되었거나, 6개월 이상 지급할 급여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환수방법을 현금 환수대상 권으로 변경하여 그 환수의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유로 발생.
-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를 시에서 예탁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상계되지 않은 금액을 보장기관인 구·군청에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

적으로 휴·폐업, 장기간 영업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가 어렵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급기관이 아닌 구·군청이 환수함에 따라 체납자의 반발이 빈번하게 발생함.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부당이득금 발생 분 중 건강보험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고, 의료급여 부분은 구·군에서 환수하도록 하여 징수업무가 이원화되어 이루어지는 이유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 체납이 발생한 후 6개월 이후 구·군에 대한 통보가 되는 절차적인 문제도 징수를 어렵게 하는 원인임.

[개선 권고사항]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과 구·군청으로 이원화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유관기관과의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체납관련정보가 건강보험공단과 구·군청사이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구·군청의 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기금 분야

(1) 해운대구 신청사 관리기금의 적립액 방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기금의 적립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하고 있음.
-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 41억, 2004년 15억, 2005년 5억, 2016년 1억, 2017년 3억, 2018년 2억, 2019년 10억 총 적립액 77억이며 그동안 경비지출 및 이자액을 계산한 후 현재액은 95억여원임.
- 2003년도 및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적립금액이 전무하며 기금을 적립한 연도에도 적립금액이 일정하지 않는 등 원칙없이 기금을 적립함.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는 근거에 의거 적립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근거에 의거 신청사건립기금을 매년 일정액 적립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신청사관리기금을 적립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편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매년 적립 금액의 규정이 없으므로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임의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재난관리 기금의 규정과 같이 매년 최저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거나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길 권고함.

4.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1)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원칙이나 이 원칙대로 집행함이 불가능한 많은 예외적인 일들이 생기므로 관련법에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그 밖에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구에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④<삭제 2015.3.20.>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본청의 경우에는 해운대구 명의로,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는 해당기관 명의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9.1.>

- 예를 들면 가족복지과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부정수급자 환수금의 경우 가족복지과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부정수급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면 부정수급자는 반환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시 가족복지과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음. 가족복지과에서는 입금된 환수금을 해운대구재무회계규칙 제78조제5항에 따라 즉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하여야 함.

- 위의 예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세입세출외현금을 즉시 재무과와 협조 후 구(區)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즉시 이체하여야 하는데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 또한 담당자가 보통예금의 통장 및 도장도 관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은 특정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세출외현금을 취급하는 전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통사항임.

[개선 권고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특성상 각 부서별로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 처리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리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임.
- 그러나 보통예금에 입금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재무회계규칙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별지 제83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
-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통예금 인감은 상급자가 보관 관리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처리전후에 대한 상급자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5. 성인지예산 분야

(1) 문화예술 기반확충 사업 중 성인지예산 포함 권고

[현황 및 문제점]

- 관광문화과의 문화예술 기반확충 사업 중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운영은 성인지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음.

총예산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예산액	52,290,000원	74,930,000원	46,400,000원
총합계	173,620,000원		

-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사업대상은 11~16세로 되어있으며,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초중고 해운대 거주 청소년대상으로 되어있으며, 여성합창단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이면 가능한 운영사업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위의 사업은 전형적인 성인지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여성합창단의 인원구성이 지휘자 제외 전원 여성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도 성인지예산 사업대상에 함께 포함되어 관리해야 할 것임.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따라 해운대남성합창단 운영을 통해 남성참여를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권고 드림.
- 기존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재)여성가족개발원에 자문의뢰를 해서 자문 결과 선정된 사업만 편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후 추가로 편성할 사업이 있으면 상호협의할 경우 추가로 편성관리 가능함.

6. 기타 권고사항

(1) 주택임대업자의 사업자 등록 홍보 및 관리의 선행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해운대구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2017년 9월 6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계속되고 있어 해운대구 소재 주택의 양도시 세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시 국세 및 지방세, 의료보험혜택이 많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에도 주민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하며 이에 대한 관심부족과 업무분장의 불명확화로 미등록시 불이익이 크게 예상되어 향후 민원 발생이 예상됨

[개선 및 권고사항]

-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법령개정사항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해당자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이들 사업자가 보유 및 양도시 각종 세금 부담 등 과중한 불이익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어 선행행정의 과감한 도입필요 ex) 양도시, 취득세, 재산세(공동주택), 보험료감면
- 소관과는 다주택소유자를 파악(재산세과세대상자 수를 통한 파악가능)하고 특히 오피스텔사업자 중 주택전용사용자를 포함하여 이를 관리하여 2019년부터 과세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과세업자의 임대신고누락으로 인한 피해, 과태료부과, 양도시 제세 중과 등 예상되는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홍보 등 적극적인 선행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스트 플랜

[현황 및 문제점]

- 해운대구는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Blank 플랫폼’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유형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해운대구는 2019~2022년 4년간 반송2동 윗반송로 51번길 142-7 일원, 15만㎡에 국비 90억원 시·구비 90억원 등 모두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계속 살고 싶은 반송동을 만들어 갈 계획임.
-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5일자로 도시재생추진단을 조직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 재개발·재건축의 한계극복을 위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14년 도시재생 특별법 및 부산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 의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반여2·3동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 신청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반송동과 반여2·3동은 주거환경지구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인구유출이 심해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가는 등 도시가 늙어가고 있는 지역임. 반송동 및 반여2·3동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을 도시 재생하는 사업이 절실함.
-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근시안적인 계획에 의거 단순한 골목길 포장, 벽화 그리기 등 단순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된다면 근본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임.
-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7년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1,266,000천원, 복합커뮤니티 조성 320,000천원, 2017년 합계 1,586,000천원, 2018년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2,076,892천원, 복합커뮤니티 조성 272,748천원, 2018년 합계 2,349,640천원, 총계3,935,640천원이 투입되었으나 주민의 삶과 주거환경 등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임.
- 예산 180억원이라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마스트플랜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함.

(3)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반여2·3동과 반송1·2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책이주지역으로 주거환경은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지역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 건축되어 개별 주차장은 건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임.
- 그리하여 구에서는 이 지역의 주차난을 덜어 주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 매년 주택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음.
-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하고자 건물주와 협의, 구두로 매매를하기로 약속하고 구에서는 감정평가사 2개 회사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매입가격으로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매입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여 구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구에서는 감정가격으로만 매입하여야 가능하다고하면 건물주는 건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며,
- 감정가격은 건물주가 개별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도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함.
- 결국 구에서는 감정료만 감정사에 지급하고 또 다른 주차장이 가능한 곳을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정료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건물을 매각하려는 건물주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구두 계약으로만 이루어지고 아무런 제재나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 건물 매매계약은 민법에 의한 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건물주와 구청이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인데 소규모 주차장을 위한 건물 매입의 경우 구청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불공정, 불평등 계약이 되어버림.
- 이러한 사례는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행복나눔과에서 반여3동 노인 복합복지시설의 건축을 위한 인근 건물 매입 과정에서도 발생하였음.
- 공공시설의 건설시 관련 건물주나 지주들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그곳에서 건설을 할 수 밖에 없으니 당해 건물이나 땅을 반드시 매입 할 것으로 생각 매각대금을 과도하게 계상 매입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대두.

[개선 및 권고사항]

-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를 하여 건설하는 공사 외 공공시설의 원만한 유치나 건설을 위하여 토지(건물) 가감정액을 토대로 사전협의를 충실히 하고 해운대구와 건물주나 지주와의 계약시 민법에 의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상호 계약 위반시 상호 불이익이나 부담을 가지는 계약을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도 계약 위반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상대방도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어 구에서는 근거에 의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근거에 의해 구속력을 가지게 하므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람.

(4) 각종 공사발주시 구의원 및 동장에게 통보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공사 발주시 발주부서에서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면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하고 계약자 및 공사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에 공사감독을 임명하여 재무과에 회신해 줄 것을 통보하고 있으며
- 공사기간 중 해당 구의원이나 동장은 공사 시행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의 질의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함.
-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동 관내에 시행하는 공사이니 당연히 구의원이나 동장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내용을 알지 못함을 알고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없음에 실망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급기야는 구청 전반에도 상호 협조가 되지 않음을 우려함.
- 구청 공사 감독은 구청과 공사 현장과의 거리가 멀고 공사감독 외에도 업무가 많아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임.
- 따라서 현장 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경미한 사항까지도 공사 감독에 신속히 전달되기 어려워 해결이 지연되므로 주민들의 불평과 불편이 많음.
- 현재 관내 주민 중에서 공사 명예감독관을 임명 운영하고 있으나 임명된 주민이 시공자에게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건의하여도 시공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 주민은 관심이나 책임감이 없게 되어 현재 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사 시공시 주민들의 불편해소나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기 위하여 재무과는 아래사항을 공사지역 구의원 및 동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를 바라며.
- 나아가서 해당 구의원 및 동장을 공사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계약자에게도 그 사항을 통보하는 것을 제도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길 바람.
- 이럴 경우 구의원이나 동장은 관내에서 시공하는 각종 공사 현황을 알 수 있어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시공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사, 구의원, 동장이 현장에서 조치하고 시공사는 그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함으로써 시공자가 좀 더 성실한 시공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재무과에서 발주부서와 구의원, 동장에게 공사계약 체결 통보시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개요, 계약자, 명예감독관(구의원 및 동장)을 명시 통보하는 것을 제도화하길 검토 바람.

(5) 배달강좌 예산의 증액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배달강좌
 - 강사가 직접 구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제도
 - 사업기간 : 3월 ~ 10월
 - 신청기준 : 최소 7명 이상의 성인이 학습동아리 구성 후 신청
 - 운영방법 : 구민이 정해진 기간에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배달강좌를 신청하면 심사 후 배달강좌를 지원
 - 지원사항 : 총 20시간 강의 지원
 - 지원강좌 : 인문교양, 문화예술강좌 등
 - 배달강좌 현황

연도	지원강좌(수)	참여자수(명)	예산(천원)
2019	24		19,200
2018	24	264	15,600
2017	22	258	14,300
2016	20	190	13,000
2015	21	216	13,650

- 담당 부서에서는 특정 학습 동아리에 배달강좌를 전·후반기 연속 지원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타 학습 동아리 강좌 개설이 불가하다고 전반기 지원 학습 동아리는 가급적 후반기에는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반기 학습 동아리는 배우던 강좌를 계속 받지 못하여 중도 하차에 따른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수강생이 연속성 있게 강좌에 참여하여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전반기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이 후반기에도 그 강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검토 바람.

(6)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인 육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 해운대구 관내의 경로당 시설은 246개이고 육아지원센터는 고작 1개소 뿐임. 육아하기가 편해야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 질 것임.
- 해운대구 육아지원센터는 해운대구 석대 산업단지내에 위치하여 산업단지내의 근무 가족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 외 일반주민들은 접근이 불편하므로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실질적인 인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를 들면 경로당은 현재 246개로서 숫자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경로당 신설은 자제하고 운영을 내실있게 하여야하며
- 육아지원센터를 확충하여 해운대·반송·반여지역 등에 신설을 하고 운영을 내실있게 하여 육아에 대해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고 육아지원센터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구대책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생각됨.
- 또한 반여3동 노인복지 복합시설 신축시 육아지원센터를 포함하는 명실공히 종합 복지시설을 건축하길 권고함.
- 각 부서에서 조그마한 시책이라도 인구대책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으나 민원여권과의 탄생축하기념증서 발급 등은 전시행정으로 보이며,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연계접수 운영시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이므로 이와 같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길 바람.

2017회계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1	담당부서	건설과		
시정 및 개선사항	좌동 진출램프 설치공사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 예산집행 현황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좌동진출램프 설치	1,000,000 (특교세)	-	1,000,000 (이월)	1,180,000 (본예산+이월)	58,244	1,121,756 (용도변경1,000,000 감액조치121,756)

※ 용역개요

- 용역명 : 좌동진출램프 설치공사 기본,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 규모 : 좌동진출램프 설치 L=444m, B=7.6m, 도시관리계획 결정 1식
- 위치 : 좌동 신해운대역 일원
- 용역기간 : 2016. 12. 30. ~ 2017. 10. 27.
- 용역비 : 58,244천원(147,266천원 → 58,244천원으로 타절 정산)
- 도급사 : (주)거원엔지니어링

◆ 조치결과

- 좌동 진출램프 설치는 인근 동부산관광단지조성등에 따라 장산로의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 추진 과정 중 부산시의 해운대 주변 도로교통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부산시에서 해운대구 일원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사업추진 반대로 인하여 사업 추진을 취소하고 인근 좌동재래시장의 진출입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좌동진출램프 설치사업을 좌동재래시장 일원 도로개설 사업으로 용도변경하여 추진하였음.
-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 및 검토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위치선정 및 효율성 여부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진행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2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시정 및 개선사항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적기에 예산집행의 태만, 추경시 소극적 감액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을 제외한 기타의 집행 잔액은 필요한 예산 집행의 방해와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정교한 예측기법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필요하며, 예산배정기관 등에 대한 설득력 강화 등을 통해 계획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여 계획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잔액 발생 사유】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 집행잔액 435,949,400원 중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564,400원을 제외한 435,385,000원은 2017년도로 이월된 특별조정교부금(시설비)의 잔액임.

반여동 690-1번지 일원에 반려동물학교를 조성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으나,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사업이 보류되면서 공사 미착공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함.

특별조정교부금 잔액 435,385,000원은 우리구 타사업 예산으로 활용(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조치함.

【조치결과】

향후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상황 및 여건의 면밀한 파악 등을 통해 계획 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2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시정 및 개선사항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 2017년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 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총예산액	집행 잔액	잔액비율	주요 미집행 사유
사회복지관 운영	4,227,730,000	157,932,400	3.74%	인건비 차액
보훈대상자 지원	1,359,975,390	156,532,340	11.51%	참전명예수당 차액
평일, 방학 아동급식 지원	910,033,000	132,846,780	14.60%	급식대상자 인원부족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1,970,919,000	189,388,390	9.61%	인건비 차액

【시정 및 조치결과】

- ▶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집행 잔액 관련
 - 복지관 7개소에서 157,932,400원 집행 잔액 발생
 - 복지관 운영비 630,630,000원 전액집행
 - 복지관 인건비 3,597,100,000원 중 잔액 157,932,400원 발생
경력직 퇴사 후 신규채용 시 호봉 차이 등으로 인건비 잔액발생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지급)

- ▶ 개선방법 :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는 복지관 규모(면적유형)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나, 인건비 소요액은 종사자 호봉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기준을 실제 소요액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시와 협의 예정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2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시정 및 개선사항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집행 잔액 관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인건비	1,842,235,000	1,664,938,230	177,296,770
운영비	126,350,000	114,258,620	12,091,380
행사지원비	2,334,000	2,333,760	240
합계	1,970,919,000	1,781,530,610	189,388,290

<시설 인건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수가 2017.12월 기준 박애원은 25명, 은혜의집은 19명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11)에 의하면 박애원은 생활지도원 2명, 은혜의 집은 생활지도원 4명, 조리원 1명이 부족함.

부족인원 총 7명에 대한 인건비(2,100천원×7명×12월=176,400천원) 집행 잔액 발생

☞ 1호봉 기준 생활지도원 인건비 대략 금액임.

아동현원 및 연령 변동 등에 따라 생활지도원 기준인원이 달라지므로 특정기간 아동현원에 비해 종사자 수가 배치기준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단, 아동현원 추이에 따라 생활지도원 추가채용에 대해 시설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시설 운영비>

운영비는 아동 수에 따라 아동 1인당 121,700원으로 지급. 두 시설 정원 박애원 51명 은혜의집 66명이나 아동현원이 2017.12.기준 박애원 39명, 은혜의집 35명으로 정원에 못 미쳐 운영비 집행 잔액 발생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2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시정 및 개선사항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p>▶ 평일,방학 아동급식 지원 집행 잔액 관련 <급식아동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2,077명(일반 1,552명, 지역아동센터 525명) - 2017년: 1,937명(일반 1,438명, 지역아동센터 499명) <p><2016년 아동급식 신규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방학: 138명(동 주민센터: 63명, 지역아동센터: 75명) - 겨울방학: 133명(동 주민센터: 87명, 지역아동센터: 46명) <p><2017년 아동급식 신규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방학: 113명(동 주민센터: 61명, 지역아동센터: 52명) - 겨울방학: 235명(동 주민센터: 211명, 지역아동센터: 24명) <p>▶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및 추후 대책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아동 수 감소로 인한 급식인원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식 우려가 있는 사각지대 아동 발굴 지속적 추진 2.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 아동의 결석 및 공결에 따른 잔액 발생 3. 현 급식 지원아동 수에 비해 예산을 넉넉히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급식지원 인원 축소 등 방지를 위함 <p>▶ 개선 방법</p> <p>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급식지원인원을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아동 급식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고 있으나, 잔액과다 방지를 위해 신규 급식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및 각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아동의 출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2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시정 및 개선사항	세출예산 집행 잔액의 과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 참전명예수당 집행 잔액 관련

<지급대상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자로 65세이상 해운대거주자 단,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
- 2017년 명예수당 예산 : 전액 시비
- 총예산액: 1,200,000천원
- 산출내역: 2,000명*50,000원*12월=1,200,000,000원

※ 대상인원 2,000명 산정이유

전년도(16년 월평균)지급대상자 1,882명에서 약10%정도의 여유를 두고 2,000명 예산 산정 ▷ 시에서 예산편성 (신규, 전입 등 대상자 변동사항 반영)

▶ 2017년도 잔액사유 → 지급대상자 감소

- 당초 시비 지급시는 월 평균 2,000명(연간 24,000명) 예상
- 실제 17년도 지급 인원은 월 평균 1,768명(연간 21,225명)

▶ 대상자감소 이유

-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나 신규신청자는 많지 않음. (사망.전출자 증가), 사망자89명

▶ 개선방법 : 시와 협의하여 사망자 수나 전출자 수 등 예년 자료를 참고하여 최대한 예측가능 한 범위에서 예산을 산출할 계획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2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시정 및 개선사항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금액	비율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236,869,860	2,151,896,360	96.20%	지원대상 시설의 사업포기
경로당 임차	182,195,000	120,816,450	66.31%	계약갱신 시 인상요인 해소
출산지원금 지원	689,000,000	118,300,000	17.16%	출산율 하락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지원	7,234,445,000	330,863,260	4.57%	아동 및 교사 감소
가정양육수당 지원	12,953,928,000	114,028,000	0.88%	아동 감소

【시정 및 조치결과】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아하브마을) 생활관 2개동 증개축을 위한 사업이나 대상 시설인 아하브마을이 자체 준비사항 미비를 이유로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 경로당 임차는 경로당 임대차 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분 및 월세금액을 반영하였으나 계약 갱신 시 건물주의 임차료 증액 미요구로 인해 발생함. 경로당 임차보증금은 계약갱신에 따른 증액규모 예측이 불가능하며, 신규 임차경로당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2016년 1.047⇒ 2017년 0.884)에 따른 신청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 2016년 지원현황 : 둘째(1,082명), 셋째이상(181명)
 - 2017년 지원현황 : 둘째(901명), 셋째이상(193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2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시정 및 개선사항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보조어린이집 인건비지원 사업은 2017년 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2개소 (한나, 재송원광) 폐지로 인하여 인건비 지원 교직원 수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함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2016년 대비 지원 아동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평균 지원아동 수 : 2016년 7,847명 ⇒ 2017년 7,017명 - 2010년생 아동들이 2017년 1월부로 양육수당 중지처리가 되어 2016년 12월 대비 2017년 1월 515명 감소하였으며 -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을 하는 아동들이 증가하여 어린이집 새학기 시작인 3월은 817명, 9월은 985명 전년도 대비 감소함 ○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업 중 3개 사업이 지원 대상 인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중앙부처 또는 시비 사업으로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 향후 출산율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한 예측과 중앙부처, 시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적 감액 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2	담당부서	건설과		
시정 및 개선사항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원)

부서	세부사업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
건설과	좌동 진출램프 설치 공사	941,756,000	사업 취소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사업	322,201,120	설계변경 차액

◆ 건설과 일반회계 집행잔액 대부분은 ‘좌동 진출램프 설치사업’의 사업 취소와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시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시 추경에 적극적인 감액 조치를 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3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시정 및 개선사항	이월예산의 절감노력 요구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현황 및 문제점】

- 이월예산의 절감노력 요구
 - 이월액이 전년도 배해 상당액이 줄어들었으나, 사고이월금액은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작은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임.
 - 일자리창출과의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주차장 토목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616백만원 사고이월.

세부사업	이월액	비고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	616,200,950	사고이월

【개선 및 권고사항】

- 시설비의 경우, 보상 및 민원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의 편성 시 정확한 예산의 조직, 사업, 통계목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 여부 및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 증액 및 감액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이 이용·전용·이체 및 예산의 이월 등 예산제도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조치결과】

- 구일공영주차장 상부 공동작업장 조성예산으로 2016년 예산확보 하였으나, 주차장 부지 보상지연으로 사업비 전액 미집행 후 명시이월 조치
- 2017. 8월 착공하였으나,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일부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 616백만원 사고이월 발생
-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3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시정 및 개선사항	이월예산의 절감노력 요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 이월예산의 절감노력 요구
 - 전체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상당액이 줄어들었으나 사고이월금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비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75,576,000	0	375,576,000	사고이월

【사업현황】

- 사업내용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노인시설 신축공사
- 위 치 : 반송동 424-2(자연녹지지역)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4층
- 총사업비 : 1,251,921천원(국시비:1,126,728천원,자부담:125,193천원)
- 사 업 자 : 사회복지법인 좋은세상

【조치결과】

- 사회복지법인 좋은세상에 대해 2016.11.14. 부산시 사회복지과에서 법령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여, 현재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등 사유로 대표자와 사무국장이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한 상태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3	담당부서	건설과		
시정 및 개선사항	이월예산의 절감 노력 요구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 이월 현황

(원)

부서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율
건설과	28,832,599,280	6,822,245,340	23.7%

- ◆ 건설과 일반회계 이월율은 23.7%로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17. 12.)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 및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24건 사업에 대하여 68억원 가량 이월 되었으며
- ◆ 상기 사업 중 '미포항2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중동에 위치한 미포항에 월파 방지시설(TTP)을 설치하는 항만공사로서 사업물량 증가, 파도 등 해상 날씨 및 우천 등 일기 영향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됨에 따라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로 647백만원 이월되었음.
- ◆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시 민원발생 등 주변 환경을 면밀히 검토 하여 정확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4	담당부서	세무2과		
시정 및 개선사항	지방세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세외수입 환급액의 연도별 추이

(단위: 원)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 현액	115,678,601,000	126,874,496,000	135,849,558,000
징수 결정액	147,089,708,470	160,611,261,175	158,277,762,245
수납 총액	127,752,266,260	134,427,824,065	139,312,270,245
환급 본세	936,732,360	417,717,390	1,104,852,310
환부 이자	30,726,760	14,025,010	15,381,920
환급액 합계	967,459,120	431,742,400	1,120,234,230
수납총액대비 환급액 비율	0.76%	0.32%	0.80%
실제 수납액	126,784,807,140	133,996,081,665	138,192,035,915
결손액	2,983,635,640	2,863,534,720	3,018,839,230
다음연도 이월액	17,321,265,690	23,751,644,790	17,066,887,100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환급액은 2016년에 비해 688,491,83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총액대비 환급액 비율도 2016년 0.32%에서 2017년 0.80%로 크게 증가하였음.

환급사유별 내역

(단위: 원)

구 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합 계
행정기관 착오	293,826,130	425,672,770	719,498,900
납세자 권리구제	1,886,990	143,775,110	145,662,100
납세자 착오	68,933,100	7,850,880	76,783,980
차량미등기	157,143,000	-	157,143,000
기 타	8,900,530	12,245,720	21,146,250
합 계	530,689,750	589,544,480	1,120,234,230

- 행정기관 착오로 반영되어 있는 218,805,040원은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환급액으로 오피스텔의 주택 과세전환신청에 따른 환급액임.
- 행정기관 착오로 반영되어 있는 121,388,08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시도유재산대부료 정산액으로, 시도유재산대부료를 시군구재산대부료로 착오 부과함에 따른 환급임.
- 행정기관 착오로 반영되어 있는 272,000,00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수욕장 파라솔, 샤워시설 사업자 등 운영관련 단체별 이행보증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해야 할 것을 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착오 반영하여 정산한 것임.
- 납세자권리구제로 반영되어 있는 142,864,860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6년도 부과된 일시도로 점용료 등에 대한 고등법원 소송패소에 따른 과오납 환급임.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권리 구제 등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 발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과오납 환급액 발생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재정손실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시정 및 조치결과】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증가는 주로 세외수입에서 발생 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부과과목 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 및 행정소송의 패소에 따른 것임.
-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세외수입 과오납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및 전문성 결여에 따른 단순 착오 및 실수로 분석됨.
- 향후, 세외수입 실무교육 강화, 과오납 발생 주요사례 전파, 세외수입정보
(2018. 8. 23. 교육실시) (과오납 관리 철저: 세무2과-5658, 2018.5.21.)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오납 환급금의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시정 및 개선사항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단위: 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율
2017년	연금지급금	14,737,000	2,096,230	12,640,770	85.7%
2016년	연금지급금	14,119,000	5,168,730	8,950,270	63.4%

▶ 세출예산 지출 내역의 특정업무 활동 지원 중 연금지급금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2017년 예산액 14,737,000원 중 집행잔액은 12,640,770원으로 85.7%이며, 2016년 예산액 14,119,000원 중 8,950,270원으로 63.4%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

【조치결과】

○ 연금지급금은 재해보상부담금과 사망조위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 재해보상부담금

- 산출기초 : $1,527,739,000 \times 0.129\% = 1,971,000$ 원 (보수총액x요일)
- 근거규정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연금공단 부담금 통보에 의거)
- 집행내용 : 2,096,230원 ☞ 분기별 지출

▶ 사망조위금

- 내용 :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산출기초 : $3,191,500 \text{원} \times 4 \text{명} = 12,766,000$ 원
- 산출근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0.65(공무원연금공단 기준에 의거)
 -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기준:2016.5.1.~2017.4.30.) : 4,910,000원
- 집행내역 : 0원 ☞ 집행사유 미발생
 - ※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 상 단기급여로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공무원연금법 제81조)

○ 공무원연금법 상 규정되어 있어 미집행 되더라도 예산편성 요구하여야 함.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6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시정 및 개선사항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 기금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금의 활용도가 미미하다면 일반회계 예산편성으로 운영하거나 일부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시정 및 조치결과】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우리구에서는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조사 및 식품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교육사업,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에 주로 사용됨.
- 경제침체로 인하여 주요재원 조성원인 과징금수입과 이자수입이 매년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우수한 사업개발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기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시정 및 개선사항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반영여부	반영 ○	미반영	검토중

【지적사항】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 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각 기금내역	지출내역	당해연도말 조성액
생활안정기금	1,848,089,242	36,052,680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사업	50,000,000	1,765,533,602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 사업	39,981,150	
			나눔천사의날 기념행사 운영비	3,090,000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비	25,537,170	
지출 소계				118,608,320	
장학기금	1,029,046,000	15,641,000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30,000,000	1,014,687,000

- 해운대구 장학기금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장학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구 지정 금고에 예탁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용 중.
- 2017년에는 고등학생 45명(1인당 400천원), 대학생 12명(1인당 1,000천원) 저소득층 학생 총 57명에게 30,000천원 지원.
- 해당 기금사업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1회 1,189명(중학생 358명, 고등학생 795명, 대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총 506,000천원의 장학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대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
-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정부복지정책에 의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구 예산으로 추진 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체사업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지원이 요구 됨.

【시정 및 조치사항】

-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 기금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익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도 적극 반영 예정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시정 및 개선사항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현 황]

기금조성 및 사용내역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사용비율	당해연도말 조성액
자활기금	1,234,281,983	254,362,454	19,515,000	1.31%	1,469,129,437

[문제점]

- 각 기금은 개별 기금별로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개별기금 사용 실적을 보면 조성액 대비 고유 목적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 기금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 기금의 활용도가 미미하다면 일반회계 예산 편성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시정 및 조치사항]

-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 기금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익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도 적극 반영 예정임.
 - ▶ 2018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고유목적 사업 지출 증액 조치 완료
 - 기존 : 자활근로참여자 교육 등 20백만원
 - 경정 : 자활근로참여자 교육 30백만원/자활기업 임대료 용자 240백천원
 - ▶ 2018년 말 익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유목적 사업 증가 예정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6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시정 및 개선사항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지적사항】

-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 각 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나, 개별기금 사용실적을 보면 조성액 대비 고유목적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사용비율	당해연도말 조성액
노인복지기금	477,982,583	7,200,590	58,508,750	12.05%	426,674,423
양성평등기금	508,227,180	8,395,554	11,500,000	2.23%	505,122,734

【시정 및 조치결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기금의 용도) 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양성평등 기금은 100%, 노인복지기금은 97.51% 집행하였으며
- 2018년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 기금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기금 10,000천원, 양성평등기금 3,500천원 확대 편성하였음
 - ▶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 기념사업 및 다문화가족·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구분		2017년	2018년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축제지원)		3,000천원	4,000천원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지원	○여성단체협의회 - 양성평등기념식 개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가족애축제 부스운영	6,000천원	8,000천원
	○여성자원봉사회 - 부자가족 밑반찬 지원, 저소득층 명절선물	2,500천원	3,000천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6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시정 및 개선사항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 노인복지기금

-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경로 행사 등 추진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양성

구분	2017년	2018년
○ 경로당 활성화 사업		
- 공모사업 :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5개 기관 30,000천원)	30,000천원	40,000천원
- 상·하반기 찾아가는 작은 복지관 운영		
○ 경로행사 개최		
- 효행대상 개최 (5월)	30,000천원	30,000천원
- 노인의 날 행사 개최 (10월)		

-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도 기금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개발을 통한 기금 편성 및 적극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6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시정 및 개선사항	기금사업 운영활성화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 기금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 기금의 활용도가 미비하다면 일반회계 예산 편성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검토

[답변]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적립/이유/기준액)에 의거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하여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적립액으로 하여 법정적립액의 15%는 의무예치, 나머지(원금+이자)는 사용이 가능함
- 2017년말 기준 현재 법정적립액(6,843백만원)과 이자수입액을 합친금액은 7,946백만원이며 이중 의무예치금 1,026백만원과 집행액 3,240백만원을 제외한 3,680백만원이 집행가능한 금액임
- 2016년까지 기금은 지침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 및 긴급조치를 위한 것으로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하도록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기금 운용에 제한이 많아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16.9.30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제정으로 “예측불가능 사항”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 2018년 현재 400백만으로 편성된 기금을 충분히 운용하여 상반기에 80%이상을 집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기금의 운용목적에 맞게 재난비용 충당을 위하여 기금 편성 및 적극적인 집행을 하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6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시정 및 개선사항	기금사업 운영 활성화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현황 및 문제점]

- 각 기금은 개별 기금별로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개별기금 사용 실적을 보면 조성액 대비 고유 목적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 기금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 기금의 활용도가 미미하다면 일반회계 예산 편성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조치결과]

-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광고물 정비·개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현수막지정계시대 구입 및 유지보수 등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2017년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당해연도 사용액은 110% 정도로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에도 적극 반영 예정이며 2019년 애항길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고유목적 사업 증가 예정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7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시정 및 개선사항	2017년 성과보고서의 '2016년 달성성과 수치(전년도)'와 2016년 결산서의 '2016년 달성성과 수치(현년도)'가 상이함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 지적사항 】

- 2017년 성과보고서의 '2016년 달성성과 수치(전년도)' 와 2016년 결산서의 '2016년 달성성과 수치(현년도)' 가 상이함.

【 현황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전년도 달성성과가 자동연계 되지 아니하여 2017년 성과계획서 입력 시, 각 부서에서 전년도 달성성과를 2016년 결산서의 달성성과 수치와 상이하게 입력가능
- 직제개편, 부서 업무조정 등으로 최초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시점과 성과보고서 작성시점 시 달라진 달성성과에 대해 각 부서 담당자가 임의 수정하여 입력

【 시정 및 조치결과 】

- 2017년 결산서상의 전년도 달성성과를 2016년 결산서 기준으로 동일하게 수정조치 완료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입력 시 전년도 달성성과가 자동연계 되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건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8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시정 및 개선사항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문제점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 지적사항 】

- 전년도 실적치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당해 연도 실적치가 손쉽게 초과달성하고 있음.

【 현황 】

성과지표(단위)	목표대비 달성률	'16년 달성성과	'17년 달성성과
스마트비치 시스템 이용률(%)	목표	75	75
	실적	85	88
	달성률(%)	113%	118%
해수욕장 관광객 편의시설 만족도(%)	목표	65	65
	실적	72.7	85
	달성률(%)	112%	130%
관광안내소 방문객 수(명)	목표	450,000	450,000
	실적	546,496	573,310
	달성률(%)	121%	127%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목표	4,500	700
	실적	4,500	915
	달성률(%)	100%	131%
기획공연(전시)유치 건수(건수)	목표	50	50
	실적	65	68
	달성률(%)	130%	136%
구민 1인당 장서수(권) <small>※ 2017. 10. 01. 조직개편으로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장서수가 합쳐져 실적이 일시적으로 높아짐.</small>	목표	0	0.2
	실적	0	0.50
	달성률(%)	0%	250%

【 시정 및 조치결과 】

- 전년도 실적치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달성 성과의 분석을 통한 성과지표 및 측정방식의 적정 여부 검토
- 2019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최근 실적 대비 3개년 평균 실적의 105%정도 수준으로 목표치 상향조정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 번	9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시정 및 개선사항	정책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검토중
		○			

【 지적사항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없이 손쉽게 목표달성 되도록 설정되어 있음. 성과지표를 투입횟수 등을 주로 활용하여, 주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성과창출이라는 정책사업의 최종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 현황 】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치	달성율
성과관리 점검 평가 횟수(횟수)	분기평가 3회, 직무평가 반기 1회	5	5	100%
공약이행 평가 횟수(횟수)	분기평가3회, 직무평가 반기 1회	4	4	100%
등록규제 감축률(퍼센트)	감축건수/등록규제	10	10	100%

【 시정 및 조치결과 】

- 2019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정책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와 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반영
- 성과지표 ‘등록규제 감축률’의 경우, 규제개혁 관련 업무 이관(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에 따른 새로운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